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달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995

발의연월일: 2024. 8. 20.

발 의 자:이달희·고동진·김상욱

이인선 · 김예지 · 김장겸

서범수 • 유용원 • 김상훈

김석기 · 조은희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로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,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.

하지만, 현행법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이들에 대하여 파면, 징계, 전보 등 불이익조치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으나, 실제 피해자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, 전보 등 보호조치 규정은 부재한 상황이므로 이를 신 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또한, 국가기관등에서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비밀누설금지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규정하고, 성폭력 사건 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누설을 금지하도록 규정함으로서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5조의4제2항 및 제30조제2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4제2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의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폭력 사건 처리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피해자나 행위자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, 전보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3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5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관 내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거나, 그 처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, 그 밖에 사건처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사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사건 처리와 관련된 내용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제36조제2항제4호 중 "제30조"를 "제30조제1항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의4(성폭력 사건 발생 시	제5조의4(성폭력 사건 발생 시
조치) ① (생 략)	조치) ①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② 제1항의 경우 국가기관등의
	장은 성폭력 사건처리기간 동
	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
	필요하면 해당 피해자나 행위
	자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,
	전보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
	한다.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
	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
	<u>는 아니된다.</u>
② · ③ (생 략)	③ • ④ (현행과 같음)
제30조(비밀 엄수의 의무) (생	제30조(비밀 엄수의 의무) ① (현
략)	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② 제5조의4제1항 및 제2항에
	따라 기관 내 성폭력 사건을
	처리하거나, 그 처리 내용을 보
	고받은 사람, 그 밖에 사건처리
	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사
	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
	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누
	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
	사건 처리와 관련된 내용을 국

제36조(벌칙) ①・② (생 략)

- 1. ~ 3. (생략)
- 4. <u>제30조</u>에 따른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

<u>가기관등의 장에게 보고하거나</u>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 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 외한다.

제36조(벌칙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- 1. ~ 3. (현행과 같음)
- 4. <u>제30조제1항</u>-----
